

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의 안 번 호	380
------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9. .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정이유

- 현재 우리도는 안정적인 채무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지역개발 수요 및 갑작스런 재해 등 지방채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
-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 도모

2. 주요골자

- 기금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적립 조성(안 제2조)
- 기금은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상환에도 지원(안 제3조)
- 기금의 안정적 관리·운용을 위해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고 도금고은행에 예치 관리(안 제4조)
- 기금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하되 위원회 기능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(안 제5조)

3. 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4. 관련법령 발췌

- 지방자치법 제133조
- 지방재정법 제42조, 제110조 및 등법시행령 제39조, 제156조

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일반회계 출연금
2.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기타 수입금

②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 출연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제3조 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도의 일반회계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. 다만,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회계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 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도지사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제5조 (심의위원회등의 구성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

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

제6조 (기금관리공무원)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해

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

② 기금운용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지방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

③ 기금운용관은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④ 지방재정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

제7조 (회계관리) ① 기금의 수입,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·보고)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

③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- 제133조 (재산및기금의설치)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- 제42조 (결산상잉여금의처리)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·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률에 의한 것
2.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

- 제110조 (기금의 운용 등)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- 제39조 (잉여금의처리)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법 제42조 각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.

- 제156조 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
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